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자료제공 : 금강유역환경청

I.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발단

가. 2003.3.13. 충북 ○○군○○면 ○○리○○○-○번지에 국산차인 대추차, 칩차, 홍차 등을 생산하는 상호 ○○○(대표: ○○○)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나. 상호 ○○○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침전조 및 농축조에서 발생·침전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탈수기가 미설치되어 침전조(12.1톤) 및 농축조(11.9톤)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결국,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다. BOD는 기준(40mg/l)보다 8.6배 초과(343.8mg/l), COD는 기준(50mg/l)보다 12.6배 초과(631.9mg/l), SS는 기준(40mg/l)보다 23.5배나 초과(940mg/l)된 폐수 205m³를 인근하천을 통해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 상수원으로 유입

2. 수사경위

당시 점검자 ○○○이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통보하여 환경감시대 사법경찰관 ○○○이 동 사업장에 대하

여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

3. 수사결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 205m³를 인근하천을 통해 상수원인 금강으로 방류한 피의자 ○○○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4호의 위반으로 2003.6.5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II. 사건 수사추진 일지

- 2003. 3. 13: ○○○(대표: ○○○)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대하여 적발
- 2003. 3. 14: 시료분석의뢰(감시대 → 측정 분석과)
- 2003. 3. 20: 시료분석결과 알림(측정분석과 → 감시대)
- BOD(기준 : 40mg/l) 343.8mg/l, COD(기준 : 50mg/l) 631.9mg/l, SS(기준40mg/l)940mg/l
- 2003. 3. 21: 단속반원 ○○○의 사건발생보고 후 수사의뢰
- 2003. 3. 21: 사법경찰관 ○○○ 수사착수 및 범죄 내사부 작성
- 2003. 4. 11: 참고인 및 피의자 1차출석요구서 발부
- 2003. 4. 22: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불응
- 2003. 4. 22: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불

응 보고)

- 2003. 4. 22: 참고인 및 피의자 2차 출석요구서 발부
- 2003. 4. 30: 2차 출석요구서의 우편물 반송
- 2003. 4. 30: 수사보고(우편물 반송 보고)
- 2003. 5. 15: 수사보고(현장조사 결과 보고)
 - 참고인 및 피의자 출석요구 불응, 우편물 반송에 따라 수사과장 및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 후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내용 전달
- 2003. 5. 19: 1차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 2003. 5. 22: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에 대한 보고)
 - 참고인 진술결과 피의자 ○○○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관련 수사보고
- 2003. 5. 22: 수사보고(피의자 소환일정 연기 보고)
- 2003. 5. 28: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범죄사건부 작성
- 2003. 5. 28: 수사자료표 사본
- 2003. 5. 30: 범죄경력조회(감시대 → 대전북부경찰서)
- 2003. 6. 3: 수사보고(2차 현장조사 보고)
 - 수사과장 및 사법경찰관이 2차 현장조사
- 2003. 6. 3: 2차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 2003. 6. 4: 2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참고인, 피의자 조사 및 2차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 ○○○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됨
- 2003. 6. 4: 피의자 ○○○이 피의자 심문신청 여부 확인서 작성 및 심문신청 접수부 작성
- 2003. 6. 4: 긴급체포 통지서 발부
 - 피의자 ○○○의 가족에게 긴급체포와 관련한 내용의 통지서 발부
- 2003. 6. 4: 긴급체포에 따른 피의자 ○○○에게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한 긴급체포 확인서 작성
- 2003. 6. 4: 피의자 수감의뢰 및 긴급체포서 통보

(감시대 → 북부경찰서)

- 2003. 6. 4: 긴급체포원부 작성
- 2003. 6. 4: 긴급체포승인 요청 및 구속영장 청구(감시대 → 검찰청)
- 2003. 6. 4: 긴급체포승인(검찰청 → 감시대)
- 2003. 6. 4: 구속영장 신청서 제출(검찰청 → 법원) 및 구속영장신청부 작성(감시대)
- 2003. 6. 4: 실지심사일 통보(검찰청 → 감시대)
- 2003. 6. 5: 구속영장 실지심사
 - 북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을 사법경찰관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이송하여 구속영장 실지심사 수행
- 2003. 6. 5: 구속영장 발부(법원 → 검찰청)
- 2003. 6. 5: 구속영장 및 본건서류 일체 수령(감시대)
- 2003. 6. 5: 수용지휘(감사 → 경찰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인근 경찰서에 이송수감
 - 구속영장에 검사가 집행지휘와 관련한 실인을 날인
- 2003. 6. 5: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수용증명서(경찰서 → 검찰청) 수령
- 2003. 6. 5: 피의자 수용증명서 제출(경찰서 → 검찰청)
- 2003. 6. 10: 피의자 및 수사서류 일체 송치
 - 사건송치 후 검사의 피의자 신병요청시 때까지 피의자와 대기

III. 수사활동 상황

1. 사건의 인지

2003.5.28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침전조 및 농축조에서 발생 · 침전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탈수기가 미설치되어 침전조(12.1톤) 및 농축조(11.9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므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이 초

과되는 폐수 205m³를 금강 상수원으로 유입하였기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사건인지

2. 사건의 입건

2003.3.21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침전조 및 농축조를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6.3까지 계속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어 2003.6.4 피의자 신문조서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범죄인지보고 후 사건을 입건함

3. 범죄사실(수사결과)

피의자는 2000.12.5 충북 ○○군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국산차 제조를 위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2001.3.5 경부터 2003.5.20 경까지 칙차 등을 생산하던 자인 바,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나 공장 설립 당시부터 침전조 및 농축조에 탈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침전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03.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10까지 칙차 등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여 이를 검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허용기준치(40mg/l)보다 약 8.6배 초과(343.8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허용기준치(50mg/l)보다 12.6배 초과(631.9mg/l), 부유물질(SS)은 허용기준치(40mg/l)보다 무려 23.5배나 초과(940mg/l)된 폐수 약 205m³를 인근하천을 통해 상수원인 금강으로 유입되게 한 것이다.

4. 사건의 송치

가. 피의자 ○○○을 2003. 6. 5 구속 수사하여 2003. 6. 10 송치서류와 함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송치함

나. 송치서류

(1) 의견서(2)범죄인지보고(3)사건발생보고(4)위반확인서(5)사건대비(6)폐수배출시설 허가증사본(7)확인서사본(8)시료채취확인서사본(9)시료분석의뢰서사본(10)시료분석결과서사본(11)관련규정(12)참고인 출석요구서사본(13)출석요구서사본(14)수사보고(피의자 소환불응 보고)(15)참고인출석요구(2차)사본(16)출석요구(2차)사본(17)수사보고(우편물 반송)(18)수사보고(현장조사)(19)진술조서(20)수사보고(출석요구)(21)수사보고(연기요청)(22)피의자 신문조서(23)구속전 피의자 심문신청서(24)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25)수사자료표 사본(26)피의자 주거 진술서(27)수사보고(관련규정)(28)범죄경력조회(29) 수사보고(출장보고)(30)추가진술조서(31)피의자신문조서(2차)(32)긴급체포서(33)고지 확인서(34)긴급체포승인건의(35)수사보고(36)긴급체포통지서사본(37)구속영장(38)수사결과 보고

IV. 수사결과의 분석 · 평가

1. 총 평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사범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로 1, 2차 현장조사,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통한 증인확보, 2차에 걸친 피의자 신문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환경범죄를 구속수사함으로써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환경법 적용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내게 한 사례임



2. 잘된 점

구속수사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구속수사 절차 및 구비서류 양식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수사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능동적이고 복잡한 환경범죄에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3. 미흡한 점

현장 조사시 폐수가 배출되는 유량계의 확인 및 원수 사용량 등 원단위 물량에 대한 조사 및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가 미흡하였음

4. 향후 유사사건 수사시 보완·반영할 사항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적발확인서 징구시 단속반원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수사기관과의 공조 단속·수사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적발과 수사의 이원적인 업무 추진 체계로 인해 피의자가 구속되기전까지 계속하여 폐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방지하게 되어 상수원오염이 초래될 수도 있음

V. 참고사항

1. 수사시 착안사항(수사 노하우 등)

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 조사를 하기에 앞서 단속반원

에 의한 위반확인서와 현장사진등을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내사종결과 이번의 사건과 같이 피의자의 계속적인 위반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가급적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하는 것이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시 증거확보를 통한 조사와 현장에 대한 이해로 수사시 도움이 됨

2. 수사과정 중에 드러난 특이사항

행정기관의 단속반원에 의해 적발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시료채취 확인서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외에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만 기소로 송치가 가능하여, 단속반원의 점검당시 증거확보 미흡으로 수사시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내사종결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위반확인서의 내용만으로 행정처분의 기관으로 행정처분 의뢰할 경우 내사종결된 사건이 행정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행정기관이면서 수사업무를 병행하는 감시대의 경우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의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단속반원의 점검기법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기법에 차이가 있어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속반원과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일정주기로 바꿔 수행하여 점검시 수사기법의 도입 및 증거확보 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